

2014년 환경부 주요 질의·답변 모음 (생활하수와 유사질의)

주) 본 문서는 거래처와 정보 교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내용중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따지지 마시고 환경부로 문의 하세요

엘에스티

-목 차-

1. PE 이중벽 오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 관련
2.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
3. 오수처리조 20ton을 10ton 병렬로 설치 가능한가요?
4. 오수처리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질의
5. 건축물 증축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 문의
6. 공사용 가설 건축물내 식당 오수량?
7. 제조 제품의 구조변경시 재질검사 대상 문의.
8. 설계시공업 면허로 콘크리트 정화조를 제조할 수 있는지.
9. 야영장 오수발생량 산정
- 10.카라반, 캠핑카 의 오수발생량 산정
- 11.해상건축물 설치 인허가 관련
- 12.수변경관지구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여부
- 13.지하주차장 하수원인자 분담금 관련 건
- 14.공용면적 오수량산정에 대하여
- 15.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설계시 콘크리트 시공시 유효수심 기준은?**
- 16.정화조 폐쇄방법 문의
- 17.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기준 준수에 관한 문의
- 18.정화조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 적합여부 질의드립니다.
- 19.무허가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련입니다.
- 20.정화조 시공업등록증에 관하여 문의
- 21.수영장물배수
- 22.인접부지내에서의 오수처리시설 공동설치에 대하여
- 23.캠핑장 오수처리시설관련 질의입니다.
- 24.기존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용량 변경 가능한지요?
- 25.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관련
- 26.영업정지시오수정화조준공관계
- 27.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관련
- 28.오수량산출 적용
- 29.오수누출에 대한 검사 권한

1. PE 이중벽 오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 관련

2014.10.15 10:49:3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의 신청)중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3. 오수처리시설(4m³/일)을 PE재질(HDPE)로 제작 및 설치 시공한 경우, 『이중벽 오수처리시설 구조 안정 및 사용 검토서』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 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참고로, 시공업체에서는 PE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M 3604-1 · 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재활용품에 한해서 만 시험성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먼저,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PE 재질의 오수처리시설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M 3604-1.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로 저하는 방법에 따라 재질검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하신 “이중벽 오수처리시설 구조 안정 및 사용 검토서”를 통한 재질검사 성적서 대체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

2014.10.13 10:57:21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현장 전기 판넬에 적산전력계를 무조건 설치 해야 하는지요,
메인 전기실내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전기 판넬 전용 분전용 FEEDER에 적산 전력계가 달려 있으면 현장 전기실에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어떤것이 법규에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오수처리설과 정화조의 전기 판넬이 같은 법 적용을 받는지요.

메인전기실(적산전력계 설치된 분전반)-----> 현장 오수 또는 정화조 전기 조작 판넬

- 먼저,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 1의5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적산전력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기계.설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력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 회신 드린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드린바와 같이 현행 하수도법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산전력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이의 설치 여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오수처리조 20ton을 10ton 병렬로 설치 가능한가요?

2014.09.03 13:25:45

안녕하세요..

저의가 자연휴양림내에 오토캠핑장을 설계진행중인데요..

오수처리용량이 20ton 처리 용량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시 경관심의 중 20ton 처리시설을 10ton 병렬로 설치의견이 제시되어 10ton 병렬설치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며,
 - 질의하신 경우처럼 오수처리시설을 병렬로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의 분배 및 부패 침전 등 오염물질의 전체적인 처리율을 감안하여 각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수를 구분하여 유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4.오수처리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질의

2014.08.27 20:26:36

- 식당건물이며, 1명의 세입자가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있다
- 건물주는 그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이럴경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책임져야할 주체는?

예를 들면, 건축주 혹은 거주하고 있는 식당 주인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39조의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의 범위에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5. 건축물 증축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 문의

2014.08.21 09:27:38

문의) 기존 공장건축물이 1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공장에 연결하여 증축을 하게 될 예정인데,
기존건축물은 2007년 10월 17일 날짜로 준공된 관계로 기존건축물은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한것으로 보고,
증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발생량 산정은 현행법대로 적용시키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 가동 (공 장) - 4,892.76 m² (작업인원 25인 x 40L = 1.00 ton - 기존법령 유지)

기존 가동 (사무실) - 450.20 m² x 15L = 6.75 ton - 기존법령 유지

증축 가동 (공 장) - 345.74 m² x 5L = 1.73 ton - 현행법 적용 산정

계 - 5,688.70 m² (9.48 ton)

오수발생량 합계 9.48 ton 으로 47.40인용, 기존 60인용 오수정화조로 만족.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현재 기준의 환경부고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다만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과 별도로 새로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라면 변경되는 부분만 현행 고시된 기준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6.공사용 가설 건축물내 식당 오수량?

2014.08.20 14:59:17

공사용 가설 건축물내 식당이 오수량 산출에서 부대급식시설에 해당되는지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환경부고시(제2013-6호)의 산정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식당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하는 주용도 건축물의 부속용도의 식당이라면 동일인이 부대급식시설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 주 용도의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음식점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7.제조 제품의 구조변경시 재질검사 대상 문의.

2014.08.05 14:36:55

1. 귀 부의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기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 높이가 모두 동일하고 일부 규격 변경시 (격판간격 및 여재길이 일부 변경) 다시 재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 높이가 동일한 경우 오수처리시설 준공 시 기 발급받은 재질시험성적서로 같음하여 준공처리 가능한지 여부?
4.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목 : 오수처리시설 재질 및 성능검사 대상 문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시행령 제32조 ②항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 대상은 별표 6과 같다.
3. 시행령 별표 6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구 분	재질 검사 대상	성능 검사 대상
오수처리시설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용량별 재질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및 처리효율
정화조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 인원별 재질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이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4. 상기 규정에 근거 기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 높이가 모두 동일하고 일부 규격 변경 시 (격판간격 및 여재길이 일부 변경→처리용량 동일) 재 재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5.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 높이가 동일한 경우 오수처리시설 준공 시 기 발급받은 재질시험성적서로 같음하여 준공처리 가능한지 여부?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별표 6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재질 및 성능검사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질 검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8.설계시공업 면허로 콘크리트 정화조를 제조할 수 있는지.

2014.07.14 21:30:41

단독정화조의 제조는 현행법상 단독정화조의 제조업 허가를 득 한 사업자가 PE 또는 FRP 재질로 재질 및 성능시험을 거쳐 용량별 규격을 등록하고 이에 맞게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는 현장의 외압,하중,지반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맞게 설계하여 시공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 이때 설계시공업자가 정화조 제조업자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1개의 기준(용량별 기준)으로 일괄 제작한 단독정화조(콘크리트구조물) 를 운반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 통상 콘크리트 구조물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조계산 등을 진행하는데 이런 고려 없이 제조품 처럼 일괄로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 이 경우 제조업자가 제작하는 경우는 성능 및 재질시험을 해야하나 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는 어떤 시험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규정이 없으니 안해도 되는지요

질문 4 : 이게 허용된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득하면 콘크리트 제조 공장을차려서 대량으로 단독정화조를 찍어 시공을 하는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할 까요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자기가 직접 설치할 목적으로 정화조 설치 현장외의 장소에서 해당 설계도에 따라 직접 콘크리트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 이 경우 하수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의 규정에 따라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을 설계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콘크리트 재질로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5 제12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만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도록 하고,

-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9.야영장 오수발생량 산정

2014.07.08 15:20:34

야영장의 오수발생량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야영장의 총 면적에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자니 너무나 많은 양이 산정됩니다.

보통 건물을 건축할시에도 조경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은 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영장의 텐트 바닥면적 만으로 산정하면 안되는지 여부

나무식재등은 배제 해도 되는지 여부

공통사용부분에 대하여 통행로 여부

공통사용부분에 대하여 야외무대 여부

공통사용부분에 대하여 파라솔 여부

공통사용부분에 대하여 주차장 여부

면적 산정에 넣어야 되는 부분과 배제 부분을 구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량은 환경부고시(제2013-6호)의 산정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연면적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캠핑장은 실제 캠핑용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 오수가 발생하는 부대시설은 해당용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가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0.카라반, 캠핑카 의 오수발생량 산정

2014.06.07 20:29:11

수고하십니다.

최근 오토캠핑, 카라반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의 오수발생량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환경부고시 제2013-6호, 2013.1.18]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을 보면 야영장인 경우9L/m²적용하고 있는데

카라반(캠핑카-샤워실,화장실, 침실 등 시설갖춤)인 경우 이 단위를 적용하는지요?

예를 들어 카라반20대일때 20*1대당 면적*9 이런식의 산정이 맞는지요.

아니면 숙박시설을 준용 20L/m² 을 적용하는지요?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환경부고시(제2013-6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 산정 시에는 해당 용도에 의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캠핑장은 실제 캠핑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 동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예측한 자료를 근거하여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산정기준의 수치의 증감은 야영장은 계절별, 시기별(주말 여부 등)에 따라 수량 및 수질이 다른 경우가 있어 가능하면 실측을 통해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측이 불가하다면 실제 용도와 유사한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1.해상건축물 설치 인허가 관련

2014.06.03 16:27:45

환경부 업무추진에 노력하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서해상 10.2km 지점에 연면적 900㎡ 해상변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무인화 운영이나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시 사용할 수 있는 번기 1기, 샤워기 1기,
세면대 1개의 생활하수 및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이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에 의거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으로 보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허가를 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제1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문구는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토록 규정하며, 해상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 질의하신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해상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는 해양환경관리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2. 수변경관지구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여부

2014.06.09 08:50:54

안녕하세요..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서 수변구역에는 정화조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변경관지구와 수변구역이 같은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일선지자체 담당자분들도 "수변구역"과 "수변경관지구"를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질의용지: 수변경관지구에 건축물 신축시 모든건물에 오수처리시설(방류수질기준8ppm)을 설치하는지. 단독정화조(부패탱크방법)를 설치하는지.?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밖으로 1일 오수발생량이 2m³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m³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며,
-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m³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수변경관지구는 해당 지역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한 수변구역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3. 지하주차장 하수원인자 분담금 관련 건

2014.05.26 13:23:08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소재에 지하주차장(2개층, 연면적 2,900평) 공사를 하는데, 하수도원인자 분담금액을 개략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환경부 고시 기준으로 빌딩형태가 아닌 지하주차장(별도동)일때

부과되는 금액은 연면적으로 산출하여 약 6~7억원 부과되는데, 이렇게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실제적으로 지하주차장에 화장실은 2개소(4평 남짓)인데, 부과금액이 너무 과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환경부고시(제2013-6호)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주차장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빌딩형 주차장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화장실 면적을 적용)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오수량을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4.공용면적 오수량산정에 대하여

2014.05.23 13:19:2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면적에 따른 오수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계단 등 공유면적이 있는데 주용도는 백화점으로 판매와 업무시설이 주용도입니다.

각 층별로 있는 계단 등 공유면적은 당연히 주용도를 기준으로 오수량을 산정하는것이 맞으나 궁금한것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지하 주차장(지하2층부터 지하6층까지 있음)에 계단 및 공용면적은 주용도인 판매 업무시설로 오수량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차장에 포함된 계단이니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하주차장부속 공용면적의 오수량 산정여부를 대하여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확실한 결론을 듣지 못해 질의드립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환경부고시(제2013-6호)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공용면적 중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의 공용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5.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설계시 콘크리트 시공시 유효수심 기준은?

2014.05.09 11:56:25

안녕하세요

개인하수처리 설계.시공업체에서 정화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조 유효수심 3M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별표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규격. 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유효수심을 2.7 M 이하로 설치해야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5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2에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도록 규정하며, 이 경우 정화조의 침전 및 소화실(부패실)의 각 실의 유효수심은 1m 이상 2.7m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6.정화조 폐쇄방법 문의

2014.05.09 10:48:50

시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공사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가 차집관로 및 배수설비가 완료된 가구의 정화조를 폐쇄시, 새로 설치된 배수설비를 통하여 하수관거로 기존의 분뇨를 배출,처리하고 기존정화조에 모래를 채운후, 콘크리트로 상부를 마감포장하는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서 규정한 폐쇄방법에 부합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폐쇄하는 경우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토록 규정하며,
 - 정화조 내부를 채우는 것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민 생명 및 건물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폐쇄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폐쇄업무를 관장하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7.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기준 준수에 관한 문의

2014.05.07 15:07:51

수고많으십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공정 운영중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태료 및 부담금 관련 법령을 정리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지 협의된 수질기준을 초과시 예전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는 협의기준 초과시 초과부담금 산정기준이 별표로 따로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법에는 협의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부담금이라던지 과태료 관련사항이 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협의기준 초과시 법적인 제재를 받는 법문조항이나 규칙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준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별표10 제2항차목에 따라 과태료(2천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과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민원신청)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국토환경정책과 최현요(044-201-7280, chyoo@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정화조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 적합여부 질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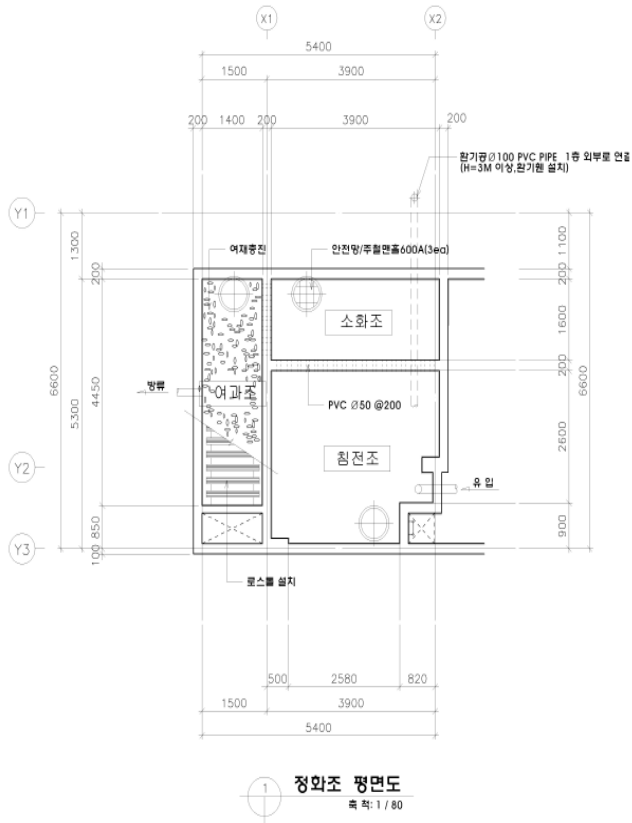
2014.04.30 14:25:53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2]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 중 나. 정화조의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에 의하면 "침전조 및 소화실(부패조)는 직렬로 연결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설계된 콘크리트 부패탱크 정화조가 정화조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화조의 침전조 및 소화실의 구조 및 규격은 '(1)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하여 직렬로 연결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콘크리트 정화조가 동 규정에 적합한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및 제조제품의 인·허가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처리해야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9. 무허가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련입니다.

2014.04.29 09:48:02

안녕하세요

무허가 건축물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설치신고를 한 경우 설치허가를 해주어도 되는지,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신고를 안한 경우 하수도법상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무허가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인.허가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정화조 시공업등록증에 관하여 문의

2014.04.23 15:40:03

정화조 시공업등록증에 관하여 문의

1. 현재 시공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행하면서 직위를 이사 또는 직원으로 등록(사대보험만 가입)하여 핸드폰 하나로 전국을 다니면서 시장을 흐리고 있으며, 심지어 조잡한 물건을 팔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음.

(“나까마:”라고 하는 자들)

2. 사전질의에는 시공업 등록증에 직원으로 등록되고, 사대보험만 있으면 정화조 판매,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공업 등록증을 내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무형지물이고,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판매, 시공을 하면 되지 왜 그 많은 자격자가 필요로 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술교육도 받고 있고, 기술자격자가 현장에서 지휘, 감독 하에 시공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사대보험에 가입된 아무 직원이 가서 현장 지휘, 감독, 시공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업 등록증을 등록할 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현장에서 지휘, 감독하에 자격증이 없는 직원 또는 일꾼들이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빠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로 등록하도록 규정하며,

- 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외 직접 고용된 직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하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4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1.수영장물배수

2014.04.23 13:49:25

안녕하세요.

수영장물 배수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위치한 더코브호텔을 인수하려 하는데..건축물 실사과정에서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는 중앙에 수영장3개(다이빙장포함),본동 1층에 3개의 개인수영장 그리고 주택동(풀빌라동)에 5개해서 총 11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수영장 배수가 오수가 아닌 우수관으로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본동의 1층3개는 도면이 없어 아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풀빌라동의 5개 수영장은 맨끝동 맨홀에서 5개의 수영장에서 배수되는 물을 한번에 받지는 못하고 조금씩 배수 한다음에 물이 일정량차면 모터로 그냥 바닥에 배수해야 한하는데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풀빌라동 바로 옆과 앞쪽에 농지가 있습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민원인 이동호

- 먼저,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분류식처리 구역 내 수영장에서 방류되는 물은 하수에 해당하여 적정 처리되어야 하나,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우수관으로 배출이 가능하나, 청소 및 샤워 등의 오수는 우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풀빌라동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수도법 제27조에 의거 공공하수도(우수관 또는 오수관)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시킨 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분류식처리구역 해당 여부 및 배수설비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47, 김성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인접부지내에서의 오수처리시설 공동설치에 대하여

2014.04.10 11:56:31

부지조성을 마치고 각각의 허가분으로 필지가 나뉘었습니다. 각건물과의 인접거리가 가까워 경제적으로나 관리의 효율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때 각건축주들의 인감증명서와 공동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것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하신 건물별로 필지가 구분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건물의 소유자 변경, 분쟁 등으로 인해 공동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3.캠핑장 오수처리시설관련 질의입니다.

2014.04.01 10:25:17

안녕하십니까?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신유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면적 11,800㎡으로 오수처리시설을 106ton(11,800*9%/1,000)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캠핑장 조성 총면적이 11,800㎡이며, 실제 캠핑 사이트는 총 15개(80㎡/개당)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관찰장으로 실개천, 잔디식재, 조경 등이 주요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입니다.

캠핑사이트 면적은 1,200㎡으로 사용인원도 사이트 갯수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무조건 총 조성면적으로 10배이상의 오수처리시설로 과다 설치해야 하는건지...

아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연락바랍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 산정은 환경부 고시(제2013-6호, '13.1.18)에 의거 건축물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캠핑장의 경우 캠핑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부지 내 사무실 등 오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맞는 산정식을 적용하여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4. 기존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용량 변경 가능한지요?

2014.02.27 09:35:36

1996년도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용량산정 하루 처리용량이 50m³/일로 준공을 받았으나 현재 하수도법 기준으로 용량산정을 재산정을 하였는데 하루 20m³/일로 나왔다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용량변경으로 다시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유입유량계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구비서류중 변경신고서, 오수량산정표 서류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보충

서류가 필요한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이런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의 변경없이 처리용량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나,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강화된 수질기준 대응과 관련하여 하수처리구역 밖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중 시설용량보다 오수량이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경우 일 최대오수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여 처리용량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공문서로 기통보('11.12월)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당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과다하게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일부 완화한 조치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과다설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하수 유입유량 산정 자료 등)를 근거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5.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관련

2014.02.19 15:54:40

과도한 업무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에서 직접관리하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6 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관리인을 선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가 A업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로 하게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는 관리인 선임이 필요없고, 위탁관리 업체인 A회사에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와 A업체가 위탁관리계약을 할 경우 A회사는 위탁관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A회사에 소속된 직원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6 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관리인 선임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A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전문업체가 아니며, 본 처리시설 1개 시설에만 국한하여 위탁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m³/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나,
 - 질의하신 경우처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3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6. 영업정지시 오수정화조 준공관계

2014.02.14 18:24:02

분뇨정화조준공시 시공은않고 준공처리만하여 면허대여관계로 영업정지를 201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받았는데 영업정지를 받기전에 설치신고를 완료하여 시공을 마무리한 현장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정지전의 시공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을 처리할 수 설계시공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질의하신 경우처럼 영업정지 전에 시공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7.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관련

2014.02.04 15:31:3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등록제품 오수처리시설을 구입하여 시공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와 이에 따른 평면도, 배수계통도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1. 이 행위를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설계시공의 정의를 등록제품이 아닌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구조 및 처리공법, 용량)하여 시공할 경우만 해당되는지 여부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설계하고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되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8.오수량산출 적용

2014.01.20 10:33:27

1.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오수량 산정에 대한 적합한 법의 적용 및 해석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 한 건축물 안에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가 여러 개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주 용도는 소매점이며 그에 대한 세부용도가 (합판)창고일 경우

3. 환경부고시 제2012-144호 중에 3.산정방법 (5) 호의 내용을 적용하여 창고일 경우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오수발생량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 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4. 다만, 세부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오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오수량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 오수처리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5. 위의 창고용도는 실제로 물건을 적재하는 순수한 창고의 용도이며, 이에 대하여 법의 취지 등을 반영하여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환경부고시(제2013-6호)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질의하신 창고가 별도의 건물이라면 오수량 산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주 용도가 소매점으로 표시된 건축물 내 창고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향후 이용계획, 관련 도면, 건물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9.오수누출에 대한 검사 권한

2014.01.02 11:58:10

하수도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건축물내 오수시설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오수의 일부가 장기간 누출되어 공공하수도에 유입되지 않고 지하수 및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누출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인접주민의 민원제기로 오수누출자의 색출을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방자치단체)이 조사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개인부지 안이라 조사를 안할수도 있습니까? 참고로 부산광역시 000구청에서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9조 1호의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수설비로 말미암아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해석을 하고 있는바, 가슴이 답답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배수설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인조사,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배수설비 설치자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하수도법 제30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47, 신옥련)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